



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

- 대구광역시달서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2. 4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【총무과】

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총무과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지금까지 통반 설치 및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 명시된 ‘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’는 규정에 따라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통·반 설치조례」를 준수하고 있으나,
-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에 ‘통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, 이에 따라 올해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령에 통장의 임명근거 및 임명과 관련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통·반 설치조례」를 개정하고자 합니다.

□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현행 제5조, 통장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,
- 현행 제7조~9조 중 운영하지 않는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을 정비 하였습니다.

□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

- 본 조례안을 2022. 3. 4일부터 3.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,
- 2022. 3. 30일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 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·시행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,
-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00822039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2. 4. 1.
제출자: 달서구청장
(총무과장)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·시행에 따라 조례에 있는 통장 임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,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통장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규정 삭제(현행 제5조)
- 나. 운영하지 않는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 삭제(현행 제7조제1항, 제8조, 제9조)
- 다. 모범통장 및 임기만료 통장 표창 수여 규정 신설(안 제9조제4항)

3. 일부개정조례안: 붙임 참조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 참조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2. 3. 4. ~ 3. 24.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행정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: 비대상

4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5)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6) 조례·규칙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통장의 위촉 및 해촉)” 을 “(통장의 임명 및 해임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② 통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회의) 동장은 월 1회 이상 통장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.

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하고,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

12조까지로 하며, 제9조(종전의 제12조)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구청장은 모범통장 및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통장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통장의 위촉 및 해촉) ① (생략)</p> <p><u>② 통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.</u></p> <p>1.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상의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 한다.</p> <p>2.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지역은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,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은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선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, 신개발 지역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도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3. 동장은 통장 중 제4항에 따라 해촉되었던 사람을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4. 통장 지원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, 통장 위촉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5조(통장의 임명 및 해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② 통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

③ 통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통장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2.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임까지 임기를 모두 마친 통장은 해촉된 날부터 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통관할 구역에서 다시 통장으로 위촉을 할 수 없다. 다만, 통장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3.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,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본다.

④ 통장은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.

1. 본인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
2. 해당 통관할구역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아니할 때

3.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
<삭 제>

<삭 제>

4. 법령위반,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

5. 통의 통·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

6. 그 밖의 사유로 통장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

제7조(회의) ① 통장은 주민이 알아야 할 긴급한 홍보사항이 있거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자치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동장은 월 1회 이상 통장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.

제8조(건의사항의 존중처리) ① 동장은 주민자치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추어 두어 주민자치회에 건의된 사항과 그 처리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자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③ 처리사항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 주민에게 알려주어야 하며, 접수 후 30일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을 시행

제7조(회의) 동장은 월 1회 이상 통장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.

제8조 <삭 제>

령」 제23조에 따라 처리진행 상황
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9조(운영실적의 평가) ① 동장은
주민자치회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
있다.
②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 통장에
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11조 (생략)

제12조 ①~③(생략)
④ <신 설>

제13조~제15조 (생략)

제9조 <삭 제>

제8조 (현행 제11조와 같음)

제9조 ①~③ (현행과 같음)
④ 구청장은 모범통장 및 임기만료로
퇴임하는 통장에게 표창을 수여할
수 있다.

제10조~제12조 (현행 제13조부터 제
15조까지와 같음)

【관 계 법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7조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

① ~ ④ (생략)

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20.>

⑥ (생략)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1조(이장 및 통장의 임명)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,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·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·면장·동장이 임명한다.

③ 읍장·면장·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·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